



제433국회(임시회)
제1차 정무위원회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개인정보 유출 시 경찰 신고 의무화〉

■ 이만희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5230호)

2026. 3.

정 무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정명호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이만희의원 등 14인
2. 제 안 일 : 2025. 12. 15.
3. 회 부 일 : 2025. 12. 16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범죄와 연관될 우려가 높고, 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, 특정 사안에 대한 입체적인 증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에 대한 신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 시 보호위원회와 경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후속 대응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제3항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유출등을 인지한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등 법정 사항을 경찰관서에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제3항).

현행	개정안
제34조(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· 신고) ① · ② (생략)	제34조(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· 신고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,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<u>보호위원회</u>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 방지,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호위원회, 경찰관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
□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(이하 “보호위원회”라 함)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¹⁾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²⁾.

○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가 발생 시 불법 다크웹 거래, 랜섬웨어, 피싱 등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,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바,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등 인지 시 보호위원회·한국인터넷진흥원뿐만 아니라 경찰관서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해커 등 범죄조직의 범행인프라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하고 개인정보 불법거래·피싱 등 2차 범죄를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
- 1)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40조(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) ③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”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.
- 2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4조(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·신고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(이하 이 조에서 “유출등”이라 한다)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. 다만,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1.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
 2.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
 3.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
 4.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
 5.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,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,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, 방법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다만, 개인정보 유출이 개인정보처리자의 단순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, 수사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까지 의무적으로 경찰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의견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○ **보호위원회**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피해확산 방지 책임 강화를 위해 신고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, 경찰 수사 등 필요 여부는 개별적·구체적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경찰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개정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.

○ **한국인터넷기업협회**는 경찰 신고를 법률상 의무로 추가할 경우 기업의 사고대응 인력이 분산되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증가하여,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한 복구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, 이보다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 신고 체계를 정착·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.

문 의 처
02)6788-5108